

정선군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

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의 개요

○ 연혁

가.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 제142조,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

나. 설치 및 조성목적 : 정선군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
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

다. 설치연도 : 2004년 (관련조례 제정일 2004.11.17, 제1954호)

라. 조성 목표액 : 390억원

○ 기금 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조성액	‘16년도 운용현황			‘16년말 조성액	‘17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24,603	27	38	-11	24,592	1,821	1,800	21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성
도모를 위하여 『정선군 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』 제3조(기금의
조성)에서 규정한 청사건립기금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 회계
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,

○ 2016년 현재까지 약 246억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,
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청사관리(2011년
조례 개정으로 청사 리모델링사업 가능)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2015년도			2016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800	773	97%	430	38	9%

②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2015년	청사주변환경정비사업	청사주변주차장부지매입	97%
2016년	청사신축사업	신청사건립 부지타당성 검토 연구용역	9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『지방자치법』 제142조, 『정선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』 제2조	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	정선군 청사건립	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: 기금 적립 중

○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
등의 지적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‘14	없음	
	‘15	“	
	‘16	“	
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(권고조치)		2011년 이후 기금적립규모가 과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 되므로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	
기 타		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: 없음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‘17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	1,800	신축적집행, 적립성, 안전성 등	(상), 중, 하
합 계	1,800	신축적집행, 적립성, 안전성 등	(상), 중, 하

4. 사업의 유사성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.유사 사업현황 : 없음

○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『정선군 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』제3조(기금의 조성)에서 규정한 청사건립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, 기금조성 목적 사업대로 2017년 이후 정선군 청사건립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.
-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(p 7,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)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청사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490억은 군비 390억원(80%), 지방채 100억원(20%)으로 재원조달계획중이며, 2016년 말 청사건립기금 246억원에서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018년까지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,
- 2017년 현재 청사건립기금 부족한 군비 144억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8억원씩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 확보가 필요함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‘14년		‘15년		‘16년	
수 입	합 계	24,058	100%	25,376	100%	24,630	100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24,058	100	24,058	95	24,603	99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		1,318	5	27	1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24,058	100%	25,376	100%	24,630	
	비용자성사업비			773	3	39	1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24,058	100	24,603	97	24,591	99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전입금/합계)

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 개정 2003.04.03.(제1912호)
- 2007.06.28. 조례 개정(제2061호)
- 2008.02.18. 조례 개정(제2096호)
- 2008.07.25. 조례 개정(제2130호)
- 2010.12.15. 조례 개정(제2229호)
- 2015.04.15. 조례 개정(제2417호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조성액	‘16년도 운용현황			‘16년말 조성액	‘17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3,988	77	76	1	3,989	63	62	1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

연도 계정	‘15년도	‘16년도
자 활	-자활근로사업단(즉석어묵, 찜빵, 임계영농) 기 능보강사업(4백만원) -신규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설치) (14.5백만원) -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(11명 /4.3백만원) -(8회/1.2백만원) -컴퓨터교육 (15회/2.4백만원)	◦ 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2호점 설치) (13.8백만원) ◦ 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(14명 /9백만원) -요양보호사 취득과정(1명) -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(6명) -제빵기능사 취득과정(3명) -바리스타교육비 지원(4명)
장 애 인 복 지	-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900명/5백만원)	-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600명/5백만원)

	-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5명/55회/3.4백만원) -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350명/2.4백만원) -우리동네 예체능 운영(23명/3백만원)	-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0명/47회/2.55백만원) -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210명/1백만원) -재가장애인 스포츠단 운영(10명/2.55백만원)
노 인 복 지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/13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5.6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-목욕 서비스(828명/38회/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(4백만원)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/10.8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5.6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-목욕 서비스(676명/22회/2.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 -추석명절 사랑나눔행사(800명/4.1백만원)
여 성 발 전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(2.5백만원/800명) -여성결혼이민자 이미용 자격증반 운영 (7.2백만원/1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‘맘스놀이터’ (3백만원/40회/441명) *실인원 : 54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1.7백만원/120명)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(2.5백만원/800명) -모성인문학특강 “엄마도 힐링이 필요해” (2백만원/8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‘맘스놀이터’ (3백만원/43회/513명) *실인원 : 83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7.7백만원/200명)
아 동 복 지	-청소년 창의력 향상 및 문화환경 개선(2.7백만원/1식) -가정의달 인형극 공연(3백만원/1식) -아리랑FC 유소년 축구교실(3백만원/1식)	-야간학습 운영 (2백만원/10명/9개월) -음악적 재능 발견 (2.1백만원/42회진행/35명)

○ 잘된 점

-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계속 지원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였음.

○ 미흡한 점

- 이율이 매해 낮아져 이자 소득의 규모가 줄어 사업비가 축소됨. 따라서 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기 어려움

○ 향후 조치계획

- 일회적인 행사 성격의 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남은 재원으로 더 많은 단체나 사업에 지원 계획.

- 해마다 줄어드는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사업비 확대 필요.

○ 기금의 존치필요성

- 복지 혜택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고, 현재 5개의 계정별 사회복지기금사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, 장애인, 노인, 여성,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·취약계층인 수혜자가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‘15년도			‘16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96.4	91.9	95.3%	100	111.3	111.3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5개 계정별 사업을 통해 장애인, 노인, 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 증진을 도모함.
-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 및 규모에서도 적정하게 운영되었음.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연도	계정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‘15년	자 활	◦ 자활근로사업단(즉석어묵, 찌뽕, 임계영농) 기능보강사업(4백만원/1식) ◦ 신규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설치) (14.5백만원) ◦ 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 (4.3백만원) -요양보호사 1급 취득과정(2명) -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(8명)	◦ 자활근로사업단(즉석어묵, 찌뽕, 임계영농) 기능보강사업(4백만원/1식) ◦ 신규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설치) (14.5백만원) ◦ 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 (4.3백만원) -요양보호사 1급 취득과정(3명) -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(4명)	95.3%

		◦ 심성치유프로그램 (8회/1.2백만원) ◦ 컴퓨터교육 (20회/2.4백만원)	-일식조리사 취득과정(1명) -바리스타교육비 지원(3명) ◦ 심성치유프로그램 (8회/1.2백만원) ◦ 컴퓨터교육 (15회/2.4백만원)	
	장애인 복지	◦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900명/5백만원) ◦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5명/55회 /3.4백만원) -에어로빅(37회/15명) -볼링(18회/10명) ◦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300명/2.4백만원) ◦ 우리동네 예체능 운영(23명/3백만원) - 공예활동(10명/12회) - 사진촬영활동(10명/12회) - 요가활동(11명/12회)	◦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900명/5백만원) ◦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5명/55회 /3.4백만원) -에어로빅(37회/15명) -볼링(18회/10명) ◦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350명/2.4백만원) ◦ 우리동네 예체능 운영(23명/3백만원) - 공예활동(10명/12회) - 사진촬영활동(10명/12회) - 요가활동(11명/12회)	
	노인 복지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 /13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6.6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-목욕서비스(1,000명/40회/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(1식/4백만원)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 /13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5.6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-목욕서비스(828명/38회/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(1식/4백만원)	
	여성 발전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(2.5백만원/800명) -여성결혼이민자 이미용 자격증반 운영 (7.2백만원/1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'맘스놀이터' (3백만원/40회/352명) *실인원 : 40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1.7백만원/120명)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(2.5백만원/800명) -여성결혼이민자 이미용 자격증반 운영 (7.2백만원/1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'맘스놀이터' (3백만원/40회/441명) *실인원 : 54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1.7백만원/120명)	
	아동 복지	-가정의 달 인형극 공연(3백만원/1식) -아동과 함께하는 가족공동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3백만원/59가족) -아동청소년 생활태도 개선 및 성장발달 도모 프로그램 운영(3백만원/18명)	-청소년 창의력 향상 및 문화환경 개선(2.7백만원/1식) -가정의달 인형극 공연(3백만원/1식) -아리랑FC 유소년 축구교실(3백만원/1식)	

‘16년	자 활	◦ 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2호점 설치) (13.8백만원) ◦ 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 (16명/9백만원) -요양보호사 취득과정(3명) -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(6명) -제빵기능사 취득과정(5명) -바리스타교육비 지원(2명)	◦ 자활사업단(커피전문점 2호점 설치) (13.8백만원) ◦ 자활참여자 자립능력 향상 교육사업 (14명/9백만원) -요양보호사 취득과정(1명) -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정(6명) -제빵기능사 취득과정(3명) -바리스타교육비 지원(4명)	111.3%
	장애인 복지	◦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900명/5백만원) ◦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0명/53회 /2.55백만원) -볼링(18회/10명) -사진촬영(35회/10명) ◦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4회/40명/1백만원) ◦ 재가장애인 스포츠단 운영(2.55백만원) -풋살(30회/10명) -육상(10회/5명)	◦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 대회 (600명/5백만원) ◦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(20명/46회 /2.55백만원) -볼링(18회/10명) -사진촬영(28회/10명) ◦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운영 (4회/210명/1백만원) ◦ 재가장애인 스포츠단 운영(10명/2.55 백만원) -풋살(35회/10명) -육상은 관심 저조로 미 실시	
	노 인 복 지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 /13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3.4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-목욕서비스(480명/24회/2.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(1식/4.1백만원)	◦ 노인단체 육성 -읍면 경로당분회장 활동비 지급(9명 /13백만원) -실버합창단 운영(3.4백만원) ◦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-목욕서비스(828명/38회/2.5백만원) ◦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(800명/4.1백만원)	
	여 성 발 전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(2.5백만원/800명) -모성인문학특강 “엄마도 힐링이 필요해” (2백만원/8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‘맘스놀이터’ (3백만원/40회/640명) *실인원 : 64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7.7백만원/200명)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(2.5백만원/800명) -모성인문학특강 “엄마도 힐링이 필요해” (2백만원/80명) -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‘맘스놀이터’ (3백만원/43회/513명) *실인원 : 83명 -다문화가족 만남의 장 (7.7백만원/200명)	
	아 동 복 지	-야간학습운영(2백만원/10명/9개월) -음악적 재능 발견 (2.1백만원/42회진행/12명)	-야간학습 운영(2백만원/10명/9개월) -음악적 재능 발견 (2.1백만원/42회 진행/35명)	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《 기금 설치 목적 》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정신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	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	- 자활사업 활성화 -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 단체 육성 - 노인건강 및 노인복지증진 -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복지증진 - 아동교육 및 상담, 복지증진	111.3%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 및 단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들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, 관련 사회복지단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, 관 주도가 아닌 민간 복지를 확대하는 목표달성에 효과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.
- 당초 계획했던 사용 내용 보다 초과 달성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: 없음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: 없음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업명	'16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자활근로사업단(커피전문점-2호점)설치, 자활 참여자 자립능력향상 교육사업	22.8백만원	-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의지향상 및 자활의욕 고취	상
②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	5백만원	-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	상
③ 여가활동 프로그램운영	2.55백만원	-여가시간을 즐기는 유익과 함께 일상 생활과 자기결정에 대한 훈련의 기회 제공	상

④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1백만원	-아동에게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함	상
⑤ 재가장애인 스포츠단 운영	2.55백만원	-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성 사업이므로 존치 재검토	하
⑥ 분회장활동비 지원	13백만원	-존치 재검토	하
⑦ 실버합창단 운영	3.4백만원	-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존치 필요	중
⑧ 이동복지관-목욕서비스	2.5백만원	-복지사각지대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봉사단 결성을 통해 접근성이 어려운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	상
⑨ 65세이상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사랑나눔 실천	4.1백만원	-일회성 사업으로 존치 검토	중
⑩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	2.5백만원	-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폭력예방 캠페인 및 녹색생활환경 실천 운동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존치 필요	상
⑪ 행복한 엄마되기 프로그램 운영'맘스놀이터	3백만원	-맘스놀이터 사업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 자녀간 서로 교감 및 자존감향상을 위해 사업 존치 필요	중
⑫ 다문화가족 만남의 장	7.7백만원	-다문화가족의 공동체 의식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만남과 화합의 장을 통하여 다문화 이해증진 사회통합을 위해 사업 존치 필요	상
⑬ 모성 인문학 특강	2백만원	- 모성인문학 강좌를 통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 및 나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, 일상의 삶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기에 사업 존치 필요	중
⑭ 야간 학습 교실	2백만원	- 지역 특성상 야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 야간 사업을 함으로써 돌봄 기능 역할 및 학습 부진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존치 필요	상
⑮ 음악적 재능 발견	2.1백만원	-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향상과 재능 향상을 위해 사업 존치 필요	중
합 계	76.2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사회복지기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5개 계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이에 기금 조달방법 및 규모면에서 적정함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법적 설치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서 복지 분야별로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5개 계정을 두었으며,
- 자활사업 참여자, 장애인, 아동, 노인,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선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존속할 필요가 있으며,
-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혜자 확대 및 계정 사업별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함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년		'15년		'16년	
수 입	합 계	4,072	%	4,080	%	4,066	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10	0.2	10	0.3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3,952	97	3,971	97.3	3,989	98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99	2.4	80	2	63	1.6
	기타수입	21	0.5	19	0.5	4	0.1
지 출	합 계	4,072	%	4,080	%	4,066	%
	비용자성사업비	100	2.4	92	2.3	76	1.9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3,972	97.5	3,988	97.7	3,990	98.1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출연금/합계)

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2002. 12. 24 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 제정 (제1906호)
- 2006. 12. 29 조례 개정(제2040호)(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)
- 2007. 04. 17 조례 개정(제2051호)
- 2010. 12. 15 조례 개정(제2229호)(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조성액	‘16년도 운용현황			‘16년말 조성액	‘17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0,180	10,180	10,180		10,180	10,180	10,180	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○ 대출 실행액(2015.12.31.현재) : 6,961백만원(68%)

- 농업·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용상황 참고

○ 잘된 점 : 저리융자 지원으로 자립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기여.

○ 미흡한 점 : 농가에서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신청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.

○ 발전방안 : 기금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업신청 전 금융 기관과 상담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기금을 신청하는 농가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

○ 총평 : 관내 농업인에게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'15년도			'16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0,180	10,180	100%	10,180	10,180	100%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5년	○ 지역농축협 협약용자사업 (10,180백만원)	○ 지역농축협 협약용자사업 (10,180백만원)	100%
'16년	○ 지역농축협 협약용자사업 (10,180백만원)	○ 지역농축협 협약용자사업 (10,180백만원)	100%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《 기금 설치 목적 》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정선군 농업·농촌발 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제3조(농안기 금의 조성)	정선군농업·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경영의 안정도모	지역 농축협 협약사업		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‘13년	없음	
	‘14년	없음	
	‘15년	없음	
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없음	
기 타		농업·농촌발전안정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금융기관과 운용협약 기간 설정	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‘17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지역 농축협 협약 융자 사업	10,180백만원	신축적 집행, 안정성	상
합 계	10,180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해당사항 없음.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액 100억원 조성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에 조달방법 및 규모에서 적정함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기금조성 100억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정선군 농업·농촌발전 안정기금의 목적인 우리군 농업인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충실히 운용할 계획임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년		'15년		'16년	
수 입	합 계	10,180	%	10,180	%	10,180	%
	전입금	0	0	0	0	0	0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0,179	100	10,180	100	10,180	100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1	0.01	0.3	0.003	0.01	0.001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10,180	%	10,180	%	10,180	%
	비용자성사업비						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0,180	100	10,180	100	10,180	100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전입금/합계)

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○ 연혁

- 설치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,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
- 목 적 :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해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- 설치연도 : 1998년 12월 10일(관련조례 제정 2005. 3. 22.)

○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조성액	‘16년도 운용현황			‘16년말 조성액	‘17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731	1,076	10	335	1,066	1,444	250	128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사전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, 사업의 유사성 및 중복성은 없으며,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매년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에는 320백만원을 적립하고 565백만원을 의무예치 하였음.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, 재난 예.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·보강,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,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,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도에는 풍수해보험을 위한 홍보·관리에 10백만원을 지출하여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였고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,066백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음.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‘15년도			‘16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365	351	96.16	10	10	100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부 사용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.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(응급복구 장비사용 제외)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‘15년	○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- 정선읍(200백만원) ○ 재해예방사업 - 화암농협뒤 옹벽(155백만원) ○ 풍수해보험 홍보 - 홍보 · 관리(10백만원)	○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- 정선읍(200백만원) ○ 재해예방사업 - 화암농협뒤 옹벽(141백만원) ○ 풍수해보험 홍보 - 홍보 · 관리(10백만원)	100%
‘16년	○ 풍수해보험 홍보 - 홍보 · 관리(10백만원)	○ 풍수해보험 홍보 - 홍보 · 관리(10백만원)	100%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320백만원으로 2016년도에 320백만원을 적립하여 100%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
- 2016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(전체)은 1,066백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금액 평균(761백만원) 보다는 305백만원 많고 지난해 보다도 335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음.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 정도	비고
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, 정선군재난 관리기금운 용및관리조 례 제6조	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등 재해사전 예방사업 실시	○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○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·보강 ○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○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○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○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응자 ○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 ○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○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,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,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	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2016년도 정선군은 재난·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선 만들기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풍수해보험 홍보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음.

○ 기금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.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‘14년	해당없음	
	‘15년	해당없음	
	‘16년	해당없음	
기금성과분석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

- 1998년 설치당시 재해대책기금,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관리 되었으나,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재해대책기금이 폐지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어 관리하고 있음.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맞추어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.

○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(예: 신축적 집행, 적립성, 안정성 등)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
사 업 명	‘17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긴급재해복구 추진 (응급복구장비 등)	150백만원	재난,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등 투입하여 긴급복구 추진	상 중 하
②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	100백만원	재난사각지대 정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	상 중 하
합 계	250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.유사 사업현황
-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함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현재 적립기준인「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을 적립」기준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 등 긴급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 및 적립 필요.
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적립된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세부 사용

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운영·관리 하고자 함.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‘14년		‘15년		‘16년	
수 입	합 계	1,302	100%	1,082	100%	1,076	100%
	전입금	410	31.5%	315	29.1%	320	29.7%
	보조금	310	23.8%	110	10.5%	10	0.9%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567	43.5%	641	59.2%	731	67.9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15	1.2%	16	1.5%	15	1.4%
	기타수입						
지 출	합 계	1,160	100%	1,082	100%	1,076	100%
	비용자성사업비	660	56.9%	351	32.4%	10	0.9%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500	43.1%	731	67.6%	1,066	99.1%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

I. 기금운용 개요

- 설치근거 : 식품위생법 제89조,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
- 설치목적 :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충당
-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5년말 조성액	‘16년도 운용현황			‘16년말 조성액	‘17년 운용계획			비 고
	수입	지출	증감		수입	지출	증감	
127	13	17	△4	123	22	25	△3	

II. 분석결과

1. 총 평

- 주요사업 추진실적
 - 으뜸 ·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: 45개소 / 8백만원
 -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 지원 : 800개소 / 4백만원
- 잘된 점
 - 으뜸 ·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우수업소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
 -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의식 개선 유도
- 미흡한 점
 -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모범업소 지정 확대가 필요하나, 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
- 향후 조치계획
 - 모범 및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지정을 확대하며, 지역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식문화개선으로 동계올림픽을 대비 함

2. 사업운영의 성과

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 %)

‘15년도			‘16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24	21	88	24	17	71

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○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‘15년	○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 지원 - 4백만원 / 900명	○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- 4백만원 / 900명	88%
	○ 음식문화개선 및 으뜸·모범업소 지원 - 8백만원 / 45개소	○ 음식문화개선 및 으뜸·모범업소 지원 - 6백만원 / 45개소	
	○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- 5백만원 / 13명	○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- 5백만원 / 13명	
	○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- 7백만원	○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- 6백만원	
‘16년	○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 지원 - 4백만원 / 800명	○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- 4백만원 / 800명	71%
	○ 음식문화개선 및 으뜸·모범업소 지원 - 8백만원 / 45개소	○ 음식문화개선 및 으뜸·모범업소 지원 - 7백만원 / 45개소	
	○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- 5백만원 / 13명	○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- 5백만원 / 13명	
	○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- 7백만원	○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- 1백만원	

○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

-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: 매우 만족
- 보조사업자의 적극성 : 만족
- 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: 만족

3.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
·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	·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	·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 지원 · 으뜸,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지원 ·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

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·활동 지원, 음식문화의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등의 효과적 성과를 거둠

○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

《 감사 지적사항 등 》

구 분		지 적 내 용	비 고
각종감사 지적사항	‘14년	해당없음	
	‘15년	해당없음	
	‘16년	해당없음	
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(권고조치)		해당없음	
기 타		해당없음	

○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

-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현재 효율적으로 운용되기에 변경 불필요

《 기금 존치의 필요성 》

사 업 명	'17년 사업비	존치 필요성	불가피성 정도
①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	4백만원	안정적 집행	상
② 으뜸·모범업소 지원	8백만원	안정적 집행	상
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	5백만원	안정적 집행	상
합 계	17백만원		

4. 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·유사 사업현황 : 해당없음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해당없음

5. 재원조성의 적정성

-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, 기금운용 이자수입, 도 보조금을 재원으로 식품 위생 교육·홍보사업, 으뜸·모범음식점 지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

6.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

-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의한 법정 기금으로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존치해야 함

《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‘14년		‘15년		‘16년	
수 입	합 계	154	100 %	149	100 %	141	100 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9	6	9	6	9	6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31	85	137	92	127	91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3	2	3	2	2	1
	과징금	10	7			3	2
	기타수입	1					
지 출	합 계	154	100 %	149	100 %	141	100 %
	비용자성사업비	16	10	15	10	16	11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137	89	127	85	124	88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과징금반환						
	기타지출	1	1	7	5	1	1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